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22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66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2289 판결

전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일

변론종결 2023. 4. 13.

판결선고 2023. 6. 8.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D과 피고 사이 2019. 7. 1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19,301,89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01,899원 및 11,228,119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채권의 발생 및 채권양도

(1) D은 2008. 1. 1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로 대출을 받았으나 11,228,119원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2) E는 원고에게 2020. 3. 23. 위 대출원금과 이자, 비용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E의 위임을 받아 2020. 6. 16. D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3) 2022. 9. 15.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합계 19,301,899원(= 대출원금 11,228,119원 + 비용 11,161원 + 미수이자 997,210원 + 연체이자 7,065,409원)에 이른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F는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직계비속 D, G, H을 두고 2019. 7. 16.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공동상속인들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9. 8.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인 2011. 10. 26.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같은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인 2012. 12. 5.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개인채무조정 이행 중에 채권자취소 청구가 가능한지)

(1) 관련 법령(이하, ‘위 법’이라 한다)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위 ‘협약’이라 한다) : 별지2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 및 협약을 살펴보면, ①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협약 제4조 제5항 제3호),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도 3개월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등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J위원회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제1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부적격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사전, 사후에 배제하도록 한 점, ② J위원회로부터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소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행위도 중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는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추심을 통한 회수가 금지되고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등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점(제12조 제1항), ③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해 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보아 궁극적으로 조정 전 채무에 대한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4조 제1항), ④ 위 법이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등(제74조 제1항) 공익적 목적 하에 조정안에 대한 합의의제까지 하고 있는 점 등 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위 법 및 협약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J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소제기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중지할 의무가 있고, 이어 심의의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와 사이에 J위원회의 의결취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J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 신청 및 심의의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을 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J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10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131,598,933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22. 11. 15. J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였고, J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 12. 28.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된 사실(원고는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위 협약 제10조 제4항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심의의결에 따른 채무조정 내역은 이 사건 채권 원금을 2,245,624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96회에 걸쳐 분할납입하는 것으로서 D은 위 채무조정 내역에 따라 분할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 그 의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D에 대한 채권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부제소 합의가 있음이 의제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 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피보전채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야 할 것인데, 개인채무조정 신청은 채무자의 갹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J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다수의 채권금융회사들은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심을 하거나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책임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고 의결이 취소되지 않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의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건물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도로명주소] 강원도 원주시

조적조(세멘벽돌) 및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및 폴리그라스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80.72㎡

2층 117.72㎡

2. 토지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대 231㎡

이상

(별지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J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J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③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회사란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이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개인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란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실명의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신청대상) 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로서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인 채무자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채무자
 7.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제8조(채권신고) ① 위원회는 채무자의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동의)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개인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된다. 이때 담보권이 소멸하거나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액으로 본다.

제11조(합의) ① 위원회는 확정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안이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이행) ① 채권금융회사는 합의된 개인채무조정안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권을 행사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중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면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1.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면책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을 불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제15조(효력의 상실)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개인채무조정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제22조(신청의 효력) ① 제8조 제1항의 접수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무관련인(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관련인에 대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부터 계속 중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 행위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관련인이 고의로 재산을 도파·은닉하거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을 제외한 채무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산의 도파·은닉, 책임재산의 감소 등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끝-

